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24-15호  
2024. 3. 15.(금)

## 차 례

### 고 시(1)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고시 제2024-37호) ..... 1

### 공 고(5)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4-297호) ..... 2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에 따른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4-300호) ..... 3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4-306호) ... 6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4-309호) ..... 9
-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공고 제2024-312호) ..... 11

### 입법예고(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4-289호) ..... 14

공람									
----	--	--	--	--	--	--	--	--	--

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기획홍보실 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7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4-37호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건물번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 소	도 로 명 주 소	건물번호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부여 고시일
석봉동 315-3	덕암북로 49	건물신축	행정구역명(덕암동)을 반영	2024. 3. 15.
대화동 275-43	옛신탄진로 143	건물신축	대화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 2,3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24. 3. 15.
장동 628	산디로231번길 18	건물신축	산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2,3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24. 3. 15.
평촌동 142-1	무지니1길 6	건물신축	동네가무진장발전하는의미의 무진니자연마을명에서유래	2024. 3. 15.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책과(☎ 042-608-5304)로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누리집) (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끝.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자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 기간: 2024. 3. 15. ~ 2024. 3. 29. (15일간)
2. 근거 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제37조제7항
3.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내용
  - 가. 처분의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직권말소
  - 나. 대상업소: 대덕구 동춘당로 178, 상가동 지하층 22호(법동, 보람아파트)
    - 누룽지마을 (박○영)
  - 다.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 누룽지마을 (사업자등록 폐업일 2018. 9. 19.)
4. 고지사항
  -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 3월 27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5. 본 처분에 대한 문의: 위생과 식품유통팀 ☎(042)608 - 6964. 끝.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에 따른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제2항(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6항 규정에 의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을 경과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검사 독촉장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 목: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에 따른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관련 근거
  - 가. 과태료 부과: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11호 및 제94조제6항
  - 나.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기 간: 2024. 3. 15. ~ 3. 31. (16일간)
4. 공고 대상: 별첨
5. 공시송달 내용
  - 가. 귀하의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경과하여 알려드리오니, 빠른 시일 내 이륜자동차 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나. 이륜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서와 함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과로 제출하시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시에 정기검사를 유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 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별표15) 규정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2조제11호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이 통지서를 받기 전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았거나 전출·이전·말소등록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과(☎042-608-6866)에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통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과 대기관리팀(☎042-608-6866)

[별첨]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에 따른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명	차량번호	주소	문서제목	반송사유
송*소	대전대덕마63**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155번길 26, *동 ***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에 따른 독촉(1,2차)	기타
이*진	대전서자02**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에 따른 독촉(1,2차)	기타
서*원	대전대덕마64**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804번길 62, ***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에 따른 독촉(1,2차)	수취인불명
김*근	대전대덕자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48번길 121, ***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에 따른 독촉(1,2차)	기타
유*인	대전중사19**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북로9번길 21, ***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에 따른 독촉(1,2차)	기타

끝.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4년 3월 15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 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본부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불입 참고
3. 공고(의견제출) 기간: 2024. 3. 15. ~ 2024. 3. 28. (14일간)
4. 기타
  - 가.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사전부과 대상자는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심한 장애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감경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경우 재산이 압류(대체)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노인장애인과☎042-608-6804, 68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입] 공시 송달 명단

연번	소유자 (임차인)	주 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1	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196-1, 209동 4**호(교림동, 양우내안에에듀퍼스트)	05주64**	2023-11-30 11:37:40	오정동 133	2024.02.22	2024.02.29	폐문부재
2	김현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133번길 42-**(유천동)	110보19**	2023-12-04 18:08:27	오정동 718	2024.02.22	2024.02.27	폐문부재
3	조**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1603번길 60-28, 2**호(유천동)	311모22**	2023-12-04 08:15:09	송촌동 487-1	2024.02.22	2024.02.27	폐문부재
4	조**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167번길 47, 4**호(갈마동, 나이스빌)	50머64**	2023-11-29 13:43:26	오정동 87-21	2024.02.22	2024.02.29	폐문부재
5	신**	대전광역시 대덕구 쌍청당로 15, 2**호(중리동)	대전대덕 자07**	2023-12-03 11:14:46	중리동 275-30	2024.02.22	2024.02.29	폐문부재
6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 136, 510동 15**호(송촌동, 선비마을아파트)	81모04**	2023-12-01 00:42:55	송촌동 494-1	2024.02.22	2024.02.26	폐문부재
7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 136, 510동 15**호(송촌동, 선비마을아파트)	81모04**	2023-12-08 19:54:38	송촌동 494-1	2024.02.22	2024.02.26	폐문부재
8	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1길 77, 101동 7**(대화동, 두레아파트)	42어53**	2023-12-13 10:49:45	대화동 31-36	2024.02.22	2024.02.26	폐문부재
9	한우***** (이**)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전원로 **-7, 한우**	162호28**	2023-11-25 11:28:35	신탄진동 118-5	2024.02.22	2024.02.26	폐문부재
10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 136, 510동 15**호(송촌동, 선비마을아파트)	81모04**	2023-12-13 00:21:16	송촌동 494-1	2024.02.22	2024.02.26	폐문부재
11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 136, 510동 15**호(송촌동, 선비마을아파트)	81모04**	2023-12-14 00:09:56	송촌동 494-1	2024.02.22	2024.02.26	폐문부재
12	현**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357, 104동 3**호(소담동, 새샘마을1단지)	10수52**	2023-12-16 09:28:47	중리동 411-4	2024.02.22	2024.03.05	폐문부재
13	이**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1653번길 96-10, 2**호(용전동)	349어87**	2023-12-18 13:11:27	법동 284-2	2024.02.22	2024.03.04	폐문부재

연번	소유자 (임차인)	주 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14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 136, 510동 15**호(송촌동, 선비마을아파트)	81모04**	2023-12-19 06:08:36	송촌동 494-1	2024.02.22	2024.02.26	폐문부재
15	GULOMJ O...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대로8번길 6, 더리치빌, **호(어은동)	23두79**	2023-12-20 22:32:34	송촌동 494-1	2024.02.22	2024.02.28	폐문부재
16	조**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1603번길 60-28, 2**호(유천동)	311모22**	2024-01-04 08:18:04	송촌동 487-1	2024.02.22	2024.02.27	폐문부재
17	엄**	대전광역시 동구 한밭대로1254번길 31, *층 *호(용천동)	262루25**	2023-12-28 19:24:29	송촌동 534	2024.02.22	2024.03.04	폐문부재
18	㈜쏘*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29길 9(옥계동)	149허76**	2023-12-30 08:37:51	중리동 418	2024.02.22	2024.02.26	수취인 불명
19	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 136, 512동 13**호(송촌동, 선비마을아파트)	01너93**	2023-12-30 09:21:48	송촌동 494-1	2024.02.22	2024.02.26	수취인 불명
20	정**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읍로213번길 **-3	06주08**	2023-12-30 22:03:35	상서동 834-6	2024.02.22	2024.02.23	주소불명
21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 136, 510동 15**호(송촌동, 선비마을아파트)	81모04**	2024-01-02 00:44:27	송촌동 494-1	2024.02.22	2024.02.26	폐문부재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4-309호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관련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5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제 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관련 근거  
가. 과태료 부과: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같은 법 제16조  
나.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 기 간: 2024. 3. 15. ~ 3. 31. (16일간)
- 공고 대상: 별첨
- 공시송달 내용  
가.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관련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덕구 환경과(☎042-608-6866)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전통지서의 경우, 2024. 3. 31.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과태료 부과금액이 부과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위 기간이 도래하면 사전통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문 의 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과(☎042-608-6866)

[별첨1]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명	차량번호	주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반송사유
신*천	82마64**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32, *동 ***호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제2제7항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기타
김*두	39서13**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178, ***동 ***호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제2제7항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기타
백*원	357주33**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로43번길 50-17, ***호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제2제7항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기타
우*영	08고32**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151, ***동 ***호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제2제7항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기타
강*림	389두94**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151, ***동 ***호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제2제7항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기타
신*원	329수56**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북로46, ***동 ***호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제2제7항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기타
차*영	24무77**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삼천길 *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제2제7항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기타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4-312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개별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1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열람
  - 기간: 2024년 3월 19일 ~ 4월 8일
  - 장소: 대덕구청 토지정책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검색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https://www.realtyprice.kr>

- 의견제출
  - 기간: 2024년 3월 19일 ~ 4월 8일
  - 제출자: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처: 대덕구청 토지정책과, 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 제출방법: 제출처(구청,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의견제출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로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제출서에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조사한 뒤 대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 문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청 토지정책과(☎042-608-5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small>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small>
의견제출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토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의견제출내용	열람지가 <span style="float:right">원 / m<sup>2</sup></span> 의견가격 <span style="float:right">원 / m<sup>2</sup></span>	
	의견제출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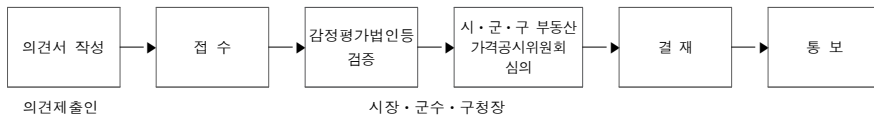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 Opinions on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lot

Receipt No.	Receipt Date.	Processing Period: <small>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the opinion hearing period expires</small>
Person submitting opinion	Name	Date of Birth(Business License No.)
	Address	
	Phone	Mobile Phone
	E-mail	Relationship to the landowner
Subject	Address & Lot No.	
Individual Lot	Land Category	
	Actual Use	
Grounds for submitting opinions	Perused Price <span style="float:right">KRW/m<sup>2</sup></span>	Submitting Persons's Opinion <span style="float:right">KRW/m<sup>2</sup></span>
	Reasons to submit opinions	

Pursuant to Paragraph (5) in Article 10 of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nd Paragraph (1) in Article 19 of the Enforcement Decree to the same Act, I submit an opinion on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lot as abo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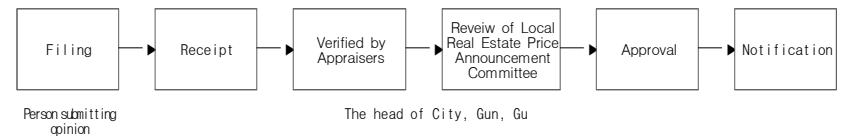
Date:

Person submitting opinion (signature)

To: The head of City, Gun, Gu

Attached	Documents related to the opinion(in case that documents are available)	Fee N/A
----------	--	------------

#### Proceedings



210mm×297mm(Woodfree Paper 80g/m<sup>2</sup>)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5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에 따른 위임사무로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수임기관(사업소)의 명칭을 현행화함(안 별표 2).

- 복합문화센터장 → 평생학습원장

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명칭과 근거법령을 현행화함(안 별표 2).

다.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를 추가함(안 별표 3).

라. 「농지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명의 용어를 현행화함(안 별표 3).

마.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등록 사무위임조례」를 폐지함.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획홍보실

(전화 : 042-608-6042, FAX : 042-608-3811, E-mail : dmsdud@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홍보실 담당자 변은영(전화 : 042-608-60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등록 사무위임조례를 폐지한다.

보건소장,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1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계획 및 허가 나. 병가 및 공가 허가 다. 특별휴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제19조 같은 조례 제21조, 제22조 같은 조례 제23조	보건소장 평생학습원장	총무과
2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부속의료 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 (휴업·폐업·재개업) 나. 행정처분(시정명령, 취소, 과징금처분 등)	「의료법」 제33조, 제35조, 제40조 같은 법 제63조, 제64조, 제67조	보건소장	
3	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약국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휴업·폐업·재개업) 나. 행정처분(허가취소, 업무의 정지 등)	「약사법」 제20조, 제22조, 같은 규칙 제9조 같은 법 제76조, 제81조	보건소장	
4	의료기기 판매업 및 임대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료기 판매업 등의 신고 및 변경신고 (휴업·폐업·재개업) 나. 행정처분(허가 등의 취소, 업무의정지, 과징금 등)	「의료기기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같은 법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56조	보건소장	
5	안마시술소·안마원 및 접골·침구 시술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휴업·폐업·재개업) 나. 행정처분(시정명령·업무정지 등)	「의료법」 제33조, 제40 조, 제81조, 제82조 같은 법 제63조, 제64조, 제67조	보건소장	
6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등록 신고 및 변경 등록 (양도양수·휴업·폐업·재개업) 나.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취소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률」 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제15조, 제23조, 제24조	보건소장	
7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인정신고 및 변경신고 (양도양수·휴업·폐업·재개업) 나.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취소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률」 제11조의2, 제13조 같은 법 제15조, 제23조, 제24조	보건소장	
8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권한 가. 설치·양도·폐기 및 중지신고 라. 행정처분 (사용금지 명령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보건소장	

		제3조, 제8조, 제16조		
9	의료기관의 영리목적 환자 유인행위 등 금지행위 중 일 부가능 사전 승인	「의료법」 제27조제3항	보건소장	
10	의료기관세탁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 및 변경신고 (휴업·폐업·재개업) 나. 지도 감독	「의료법」 제16조,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 같은 규칙 제11조	보건소장	
11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신고 및 변경 신고 (휴업·폐업·재개업) 나. 행정처분(영업의 정지·폐쇄명령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3조 같은 법률 제58조, 제59조	보건소장	
12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금연구역 지정 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같은 법 제34조	보건소장	
13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및 변경등록 나. 행정처분(등록취소, 과태료, 청문 등)	「약사법」 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같은 법 제76조, 제76조의 3, 제77조, 제98조	보건소장	
14	감시원증 발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약사감시원 임명 나. 의료기기감시원 임명 다. 의료지도원 임명	「약사법」 제78조 「의료기기법」 제40조 「의료법」 제69조	보건소장	
15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신청 나. 구급차등 운용신고 다.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과징금, 청문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제44조의2 같은 법 제55조, 제56조, 제57조	보건소장	
16	감염병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역학조사반 구성  나. 감염병관리기관지정 다.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라. 예방상 필요한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9조	보건소장	
17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보건소장	

	나.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발급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18	산후조리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산후조리업의 신고 나. 산후조리업 승계 다. 산후조리업 폐업·휴업 및 재개업신고 라. 시정명령 마.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등), 과징금, 청문, 과 태료	「모자보건법」 제15조 같은 법 제15조의3 같은 법 제15조의10 같은 법 제15조의8 같은 법 제15조의9 같은 법 제15조의11 같은 법 제15조의13 같은 법 제27조	보건소장	
19	정신보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신의료기관 허가취소, 폐쇄 및 사업정지명령 나. 과징금 부과처분 다.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라. 사회복지시설의 폐지, 휴지, 재개신고 마. 사회복지시설의 폐쇄 등 명령 바. 청문 사. 정신질환자 입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청구 수 리 아.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자.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차. 퇴원심사 등의 청구 카. 기초정신심의위원회에의 회부 타. 퇴원명령 등 파.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 하. 임시퇴원 등 거. 외래치료 명령 너. 보고, 검사 등 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러. 퇴원자에 대한 조치 머. 정신보건자문의 위촉	「정신보건법」 제12조 같은 법 제12조의3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7조의2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보건소장	
20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약품 판매업 허가 나. 한약업사의 허가 신청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업무개시 명령 등 마. 폐기명령 등 바. 개수명령 사.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아. 청문 자. 과징금 처분 차. 과태료	「약사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약사법」 제69조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77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98조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소관 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및 자치법규	수임 기관	비고
총무과	1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9조	동장	
		가. 연가계획 및 허가	같은 조례 제21조 및 제22조		
		나. 병가 및 공가 허가	같은 조례 제23조		
자치행정과	2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동장	
		가.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 제27조		
		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0조		
다.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같은 법 제40조				
문화관광체육과	3	송촌 문화의 집 운영·관리	「지방자치법」 제117조	송촌동장	
	4	신탄진 문화의 집 운영·관리		신탄진동장	
에너지산업과	5	농지에 관한 다음의 사항	「농지법」 제49조	동장	
		가. 농지대장 작성·비치	같은 법 제50조		
		나.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같은 법 제50조		
다. 자경증명의 발급	같은 법 제50조				
복지정책과	6	통합사례관리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 부터 제33조의7까지	동장	
		가. 대상자 접수			
		나. 욕구 조사			
		다. 사례회의 개최			
		라. 대상자 구분·선정			
		마.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바. 서비스 제공·점검·종결			
사. 사후관리					
토지정책과	7	통합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	동장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처리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처리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건 :

내 용	의 건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